

청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712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이루어진 2018. 8. 31.자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일부양도양수계약과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2018. 8. 31.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747호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을 각 31,317,218원 및 그중 30,327,015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317,218원 및 그중 30,327,015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0%,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12. E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건물 G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위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7. C이 I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보증하였고, 2018. 12.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9. 7. 12.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이후 C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7. 7.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0,327,015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1. 4. 2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82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8. 27. 피고 A과 사이에 C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안경점의 지분 50%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여 C과 피고 A이 이 사건 안경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말경 C과 피고 A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E와 다시 작성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절반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A은 2018. 8. 31.까지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C과 피고 B는 2005. 1. 6.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2명(2006년생, 2007년생)을 두었다.

피고 B는 2018. 11. 16.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경 “피고 B와 C은 이혼하고, C은 피고 B에게 2019. 2. 28.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B로 지정하고, C은 피고 B에게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명당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드단55326).

마. C과 피고 B는 2018. 8. 31. “C이 피고 B에게 1억 4,400만 원을 36회 분할하여 2018. 9. 30.부터 2021. 8. 31.까지 매월 말일에 4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지연이자율 연 24%).”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8년 제747호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18. 1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제3채무자 E에게 위 명령이 도달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구상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안경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중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와 본압류로의 이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안경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 A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 B에게 각기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9카단88, 2021타채30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18. 8. 말경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채권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 내지 심화시켰다.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취소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사해행위일(2018. 8. 31.)로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기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사건에서 E가 2019. 1. 12.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확인할 당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나아가 원고가 2019. 1.경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모두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과 을가 제4 내지 7, 1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C은 2018. 8. 27. 이 사건 안경점의 지분 중 50%를 피고 A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안경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31. 피고 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 사건 안경점의 각종 장비, 시설 등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규모와 시설물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까지 고려할 때 3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 C이 양도 후 보유하는 50% 지분의 가치도 그에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이 사건 안경점의 자산으로서 전체 지분 가액의 산정에 포함된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C과 피고 A 사이의 동업계약 내지 지분양도계약과 함께 또는 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8. 8. 31.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위 지분 이전과 동업계약이 체결된 2018. 8. 27.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C은 피고 A으로부터 지분 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2018. 8. 31. 피고 B에게 남은 50%의 지분까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과 피고 A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C과 피고 A이 각기 50%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안경점을 동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 B에 대한 지분양도는 피고 B가 C의 피고 A에 대한 지분 양도 사실을 안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의 피고 B에 대한 지분양도에 앞선 처분행위로 그와는 별개로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주장한 C의 채무액 246,489,000원(갑 제10, 11호증, 이 금액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가 C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로 2018. 8. 27. 당시의 채무액은 아니다)은 피고 A에 대한 지분 양도 가액 내지 위 양도 후 C이 보유하게 된 남은 지분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지분 양도 내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과 갑 제16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전후 사정과 C과 피고 B가 이혼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C이 피고 B에게 별거 중 미지급한 생활비와 과거 및 장래의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인다.¹⁾ 이러한 행위는 C이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양육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지불각서나 공정증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물론 C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채무액보다 과도한 액수의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C과 피고 B가 상당 기간 별거 중에 있었고, 피고 B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예정한 점, C의 과도한 채무부담(도박으로 상당한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자녀 1인당 100만 원)와 그 외 지급금액(1,500만 원은 위자료의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 31.을 전후로 하여 C이 부담해야 하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총액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상의 채무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B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 그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제3채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강제집행을 실행한 결과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소급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C과 피고 B가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러한 공모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노을

별지

1) C은 2018. 8.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는 별개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약속어음공정증서(을나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C의50% 지분을 받기로 하였고, 지분 가액을 위 금액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있는바, C은 재산분할금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피고 B에 대한 지분이전행위 내지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아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참고로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A의 경우 C과의 동업계약이, 피고B의 경우 이 사건 안경점의 50%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각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02465, 2022나67229)